



사 단 법 인 대 한 영 양 사 협 회

수신자 육아종합지원센터장
(경유)

제 목 ‘영양사 실태 등의 신고’ 실시 협조 요청

1. 귀 센터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2. 우리 협회에서는 「국민영양관리법 제20조의2(실태 등의 신고)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2, 시행규칙 제20조의2」 규정에 의하여 영양사 실태 등의 신고를 실시하고 있습니다.
3. 올해는 2015년 실태신고자(3년 경과 재신고)와 2015년 면허발급자(면허번호 제142477호~ 제143019호)의 신고가 진행되고 있어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, 귀 센터 산하의 영양사가 **실태신고기간(2018. 1. 1~ 2018. 12. 31)** 내에 실태신고를 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영양사 실태 등의 신고 주요내용

- 1) 모든 영양사는 최초 면허 발급 후 매 3년마다 면허를 신고하여야하며, 보수교육 미이수 시 신고 반려 가능
- 2) 미신고시 신고할 때까지 면허의 효력을 정지
- 3) 보건복지부 장관의 위탁을 받아 대한영양사협회가 보수교육 및 실태신고 수리업무 시행

나. 근거법령 : 국민영양관리법 제20조의2(실태 등의 신고)

다. 신고방법 : 영양사는 대한영양사협회 홈페이지(www.dietitian.or.kr)의 영양사 『실태신고 센터』에 직접 접속하여 신고

라. 신고대상 및 시기 : 면허 취득, 재취득 또는 신고일로부터 3년마다 신고
(영양사 취업여부와 상관없음)

신고대상(면허발급일)	신고기간	보수교육 확인 연도
2015년도 실태신고자 재신고	2018. 1. 1~2018. 12. 31	2015, 2017
면허번호 제142477호~ 제143019호 (2015. 5. 24~2015. 12. 31)	2018. 1. 1~2018. 12. 31	
면허번호 제1호~ 제142476호 (1964. 1. 1~2015. 5. 23) 중 아직 실태신고를 안한 자	현재 추가 신청 중	2013, 2015, 2017
2016. 1. 1~이후 발급자	면허발급 해 + 3년(1. 1~12. 31.)	최근 3년간 보수교육

마. 실태신고 전 필수 항목

분 류		필요서류	신청방법
보수교육 이수, 미대상 및 면제 확인된 자		재신고자 : 필요서류 없음	영양사 실태신고 홈페이지 → 실태신고 신청 → 실태신고서 작성 및 영양사 면허증 첨부
		최초신고자 : 영양사 면허증 파일 (스캔파일, 그림파일, 휴대폰 촬영 파일 등)첨부	
영양사 근무자 중 보수교육 미이수자		해당연도 보수교육 미이수자를 위한 추가교육 이수 후 실태신고	영양사 보수교육센터 → 보수교육 미이수자를 위한 추가교육 신청 → 교육이수 1일 후 실태신고
보수교육 면제 대상자 (면제 신청 후 실태신고)	군복무	입영 날짜가 기입된 병적증명서	영양사 보수교육센터 → 면제 신청 → 증빙자료 첨부 → 승인 후 실태신고
	출산·육아·질병 휴직, 장기해외 출장 등	해당연도 육아휴직 기간이 명시된 증명서 / 진단서 / 출입국사실확인서 파일첨부	
보수교육 미대상자 (미대상자 신청 후 실태신고)	보수교육 대상 근무처 외 근무자, 대학원 진학 등	해당연도 재직증명서(또는 경력증명서) / 재학증명서(또는 성적증명서) 파일첨부	영양사 실태신고 홈페이지 → 보수교육 미대상자 → 증빙자료 첨부 → 승인 후 실태신고
	미취업 등	해당연도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(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) 파일첨부	

끝.

사 단 법 인 대 한 영 양 사 협 회



(05.25)

교육1팀계장 박은미 교육1팀과장 김민주 교육1팀부장 도은경 교육국장 배미용 사무총장 김송희 회장 조영연
협조자

시행 교육국 - 0319 (2018. 05 . 25)

우편 (07345)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63로 40 라이프오피스텔 202호
전화 (02)823-5680(교 516) FAX 전송 (02)823-5990

/ www.dietitian.or.kr

/ kdasys@hanmail.net / 공개